

서울노원우체국 부설숙사 입주자 모집 공고(1차)

서울노원우체국 부설숙사 입주자 모집을 위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서울노원우체국장

1. 입주신청 대상물

- 서울상계 1동우체국 2층 숙소(86.35㎡)
- 서울상계 3동우체국 2층 숙소(68.98㎡)
- 서울상계 6동우체국 2층 숙소(81.25㎡)

2.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순위 및 자격)

- ① 1순위 : 서울노원우체국 소속직원(상시위탁집배원, 택배원 포함)중 단독세대가 아닌 직원으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 신청 공고일 현재 무주택인 자
- ② 2순위 : 단독세대 무주택 직원
- ③ 3순위 : 우정사업본부 소속 무주택 직원
- ④ 4순위 : 1~3순위 이외의 자(민간인 포함)

3.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18. 5. 24.(목) ~ 5. 31.(목) (09:00 ~ 18:00)
- 접수처 : 서울노원우체국 지원과
- 제출서류
 - ① 부설숙사 입주신청서 1통(별지 제1호 서식)
 - ② 가족관계증명서 1통
 - ③ 무주택증명서 1통
- 예비 입주자 선정 : 2018. 6. 1.(금) 개별통보
-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자격이 취소됨
- 입주가능 시기 : 2018.06.01.부터

4. 사용료(대부료)

대상(숙사)명	공부면적(㎡)	사용료(대부료) (원)		비고
		연간	월단위 환산	
상계1동우체국 2층 숙소	86.35	5,010,570	417,550	공실
상계3동우체국 2층 숙소	68.98	3,177,350	264,780	공실
상계6동우체국 2층 숙소	81.25	11,402,790	950,230	공실

5. 기타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원과(정현경 950-32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보상) 제8조의 경우에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호의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의 과납금을 반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대부계약의 해지 청구) ① 계약기간 중 대부받는 자가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 등 퇴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대부받는 자가 과납한 금액을 반환한다. 이 경우 해지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간까지 대부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대부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대부받는 자의 손해배상 책임) 대부받는 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대부받는 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대부재산의 제3자 매각) 대부재산이 대부받는 자 외의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이 계약은 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대부받는 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대부받는 자의 과납금을 반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금 등의 징수) 대부받는 자가 대부기간의 만료 또는 대부계약의 해지 이후 계속해서 대부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대부자가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제19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며, 대부받는 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부자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대부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협조의무)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가 재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부재산에 출입하거나 사용자 실태조사시 사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재해보상) 대부재산의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대부자 또는 대부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8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 부 자
관리기관 등 (인)

대부받는 자
성 명 (인)
소 속 기 관
주민등록번호
주 소